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정3586 판결 모욕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4고정3586 모욕

피고인 A

검사 손찬오(기소), 권영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12:31경 C 사이트(D) 내 등산 포럼 게시판에 "끄응.. 자게에서 일베충 이야기 듣는 사람 있어서 보니 등포에도 있네요"라는 제목으로 "여기에도 활동 하네요 - - 만약 일베충이라면 등포는 안 휘젓길 바라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 글을 확인한 피해자 E가 2014. 3. 22. 13:01경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C유저 시점 일베유저는 일베충, 일베 유저 시점 C 유저는 뽐거지 저도 등산, 트레킹, 잔차 등 다 좋아해요. 서로 다양성 존중하면 좋죠. ^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자 2014. 3. 22. 13:45 경 "일베충 하나 저격해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아까 일베충 같다고 올라온 글 보고 그 회원 지난 글 조회해보니 등포에도 글이 있더군요. 등포에도 활동하는 사람이라 우려가 돼서 등포에 글 적었더니 일베충 인증하는 듯한 댓글을 답니다. F 회원을 보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전자메일 주소, 사진, 그간 피해자의 사생활을 기록한 글을 캡쳐 및 링크함으로써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 1. 증인 E의 법정진술
- 1. 고소장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모욕의 정도가 몹시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G 사이트에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올린 글의 내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예컨대 나쁜 놈, 죽일 놈 또는 망할 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87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한 '일베충'이라는 표현은 최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C 사이트 등산 포럼 게시판에 일관되게 'F'이란 별명을 사용하여 글을 올려온 점,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등산 포럼의 성격상 사이버 공간 이외에 오프라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회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자메일 주소, 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링크한 점 등을 감안할때,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본건의 경우 주위 사정을 종합할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의 경우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선